

자동차관리법

[시행 2022. 12. 1.] [법률 제 18522 호, 2021. 11. 30., 타법개정]

- 국토교통부(자동차정책과 - 교환·환불), 044-201-3838, 3839
- 국토교통부(자동차운영보험과 - 자동차 매매, 경매 등), 044-201-3856, 3857
- 국토교통부(자동차운영보험과 - 자동차 등록업무), 044-201-3860, 3861
- 국토교통부(자동차운영보험과 - 자동차 검사, 정비), 044-201-3858, 3859
- 국토교통부(자동차정책과 - 인증, 튜닝), 044-201-3840, 3841
- 국토교통부(자동차정책과 - 리콜), 044-201-3843, 4999
- 국토교통부(첨단자동차과 - 자율주행자동차), 044-201-3848, 3849
- 국토교통부(첨단자동차과 - 자동차 안전기준), 044-201-3850, 3853

제 65 조의 2 (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)

-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(법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(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(이하 "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"이라 한다)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(이하 "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"라 한다)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
2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·외관 사진
3.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
4.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및 인수방법

- ④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, 자동차등록번호,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,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.
- 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자동차관리사업"은 "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"으로, "제53조"는 "제65조의2"로, "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자동차관리사업자"라 한다)"는 "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"로 본다.

[본조 신설 2017.10.24]

제60조(자동차경매장의 개설·운영 등)

- ①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, 합리적인 수급 조절,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·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경매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(이하 “경매장”이라 한다)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6. 1. 28.>
-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③ 경매장을 개설·운영하는 자(이하 “개설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경매 대상 자동차의 등록 사항과 안전 및 성능 상태 등을 점검·검사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고지할 것
- 2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

-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·검사의 기준 및 검사 결과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⑤ 이 법에 따른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09. 2. 6.]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[시행 2022. 10. 26.] [국토교통부령 제1155호, 2022. 10. 26., 타법개정]

제128조(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·검사등)

- ① 경매장개설자는 [법 제60조제3항제1호](#)의 규정에 따라 경매대상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·검사하여야 한다.

1. 경매대상자동차에 표기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의 여부
2. 경매대상자동차를 출품한 자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인지의 여부
3. 경매대상자동차의 구조·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

- ② 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·검사결과를 [별지 제89호서식](#)의 경매대상자동차점검·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점검·검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·사진·필름 기타 영상매체를 통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가 점검·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.
- ③ 경매장개설자는 [별표 25](#)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능점검·검사시설에서 제1항의 점검·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6. 7.>

자동차관리법

[시행 2022. 12. 1.] [법률 제18522호, 2021. 11. 30., 타법개정]

제65조(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)

-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[국토교통부령](#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[국토교통부령](#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[국토교통부령](#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[제12조제2항](#)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12. 30.>

[전문개정 2009. 2. 6.]